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1년 10월 17일

G 뉴점프 단기 채권투자신탁 1호

신탁약관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- 1 투자신탁 회계기간 변경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투자신탁 회계기간 변경: 제12조(투자신탁회계기간)	제12조(투자신탁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12조(투자신탁회계기간) ①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2011년 5월 18일 이후부터 다음 회계기간을 적용한다.(1차 회계기간 경과 후 2012. 04. 01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함) 1. 제1차: 2011.05.19 ~ 2012.03.31 ②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